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 14,744호, 1995년 8월 4일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995년 1. 5. 법률 제492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연장함(령 제32조 내지 제34조)
- 나.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분리입찰제를 도입함(령 제38조제3항).
- 다. 시설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에 관한 설계로 하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이 도입되거나 주요시설물이 포함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의 12)
- 라. 외국감리전문회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감리전문회사도 국내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및 제54조의3 삭제,령 제54조제3항).
- 마.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함(령 제61조).
- 바. 기술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학력·경력자를 학력·실무경력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함(령 별표1).

〈법제처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설계감리대상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범위)법 제2조제3호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

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관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掌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건설 관련업체의 임원(개인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자를 말한다)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업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을 받은 자 또는 건설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 량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9.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전문기관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건설기술자는 매 5년마다 1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의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되며,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① 법 제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를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이동사항

2. 기술자격 또는 학력변경사항

3. 상별사항

② 법 제2조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한다)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된 때와 감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감리원수첩에 사업명·감리기간·담당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 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 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 또는 제46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전문기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 훈련의 대행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제2항·제85조 제5항·제86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중 “200인”을 “300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기타 관계기관”을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발주청”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관계기관에”를 “관 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80인”을 “120인”으로 한다.

제29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30조제2항중 “투자를”을 “투자액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작성하여”를 “당해연도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과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와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9조 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신기술의 보호 등)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발주청에 권고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

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5장의 제목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설계 등 용역의 참가제한)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자

가. 해당전문분야의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의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다.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2. 기술사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범위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3.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전문분야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중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역사업”을 “1억5천만원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의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내지 제3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제38조의3(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

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4(건설공사 시행과정)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수, 철거, 개량사업인 경우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5(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의6(건설공사의 설계)① 발주청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발

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설계도서작성·기초토질조사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할 것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 혹서, 혹한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것

제38조의7(설계자문)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38조의8(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

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규모등에 따라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9(유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결과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설물의 관리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건설공사시행과정의 세부사항) 제38조의4내지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의 착공 및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1(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른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12(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

3.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이상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 공사나 터널, 지하철, 냅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

다. 막구조, 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0조제3항중 “설계도서·시방서”를 “설계도서”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건설업자등”을 각각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을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상품(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을 포함한다)”으로, 동조제4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재료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따라 당해 재료에 대한 총시험회수를 산출하여 그 산출된 회수의 5분의 1이상 관리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49조의2 각호의 기관”을 “법 제2조제3호의 3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자등을”을 “건

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등에게”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로,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품질시험”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할 것

2. 정기안전점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것

가.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실시할 것

나.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다. 재해발생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회수를 증가시킬 것

3.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④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⑤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결과와 그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준공후 2월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장”을 “기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수 둘

제47조의4제3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표준납품서”를 “납품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지방해운항만청

제4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시험대행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다. 가목 및 나목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는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 5건이상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여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업법 제50조 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로 하고,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0조의3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의 1년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용역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종전의 제59조의2)
제목을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분회, 지부,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시정지시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

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항의 접수

5.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이에 고용된 감리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의 교부 및 관리

3.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신고의 접수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4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현황의 작성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한건설

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및 대한측량사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대한건설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3. 한국기술사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4. 대한측량사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주요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힐주로, 산도, 냅,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

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내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84년 8월28일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30일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30일까지 (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제6조 제2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4항 본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에 의하며, 소요대지면적은 주차대수 1대당 18m²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11.5m²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낮은 가액에 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7호, 1995년 8월 5일

개정이유

노상주차장 시요건을 완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함(제4조).
- 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함(제5조).
- 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요금계산법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물부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제14조).

〈건설교통부 제공〉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제3호 단서중 “8m”를 “6m”로 한다.

제5조 제3호라목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